

##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조기 철거 및 비용지원을 통해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5.

### 거 창 군 수

- 사업명 :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2. 16.(금) ~ 2024. 3. 8.(금) / 22일간
- 접수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사업물량

구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량	279동	7동	30동

#### 6. 지원기준

○ 지원 분야별 기준

- 주택 철거·처리 :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을 포함
- 비주택 철거·처리 : 주택부지 외의 건축용도가 창고·축사인 건축물
- 주택 지붕개량 : 당해연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따라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건축물 대장 기준 주택만 지원 가능, 비주택은 개량지원 불가

○ 미등재(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가능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예상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 폐기물**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철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는 운반·처리비 집행 가능

\* 석면해체제거업자 철거계약서 및 공사대금거래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지방 고용노동관서), 자연재난피해신고서(지자체), 화재신고서(소방서) 등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7. 지원금액**

구 분	주택부지 내(지붕개량은 주택만)		주택부지 외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면적 200㎡ 이하인 측사·창고 철거·처리
우선지원 가구	1동당 전액 지원	1동당 10,000천원 한도내 지원	· 건축용도가 측사·창고인 건축물로 1동당 200㎡ 이하 전액 지원
일반가구	1동당 3,520천원 범위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최대 7,000천원 지원	1동당 3,000천원 범위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최대 5,000천원 지원	

**8. 대상자 선정 기준**

구 분	우 선 순 위
주택 철거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작은 규모 우선 지원)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비주택 철거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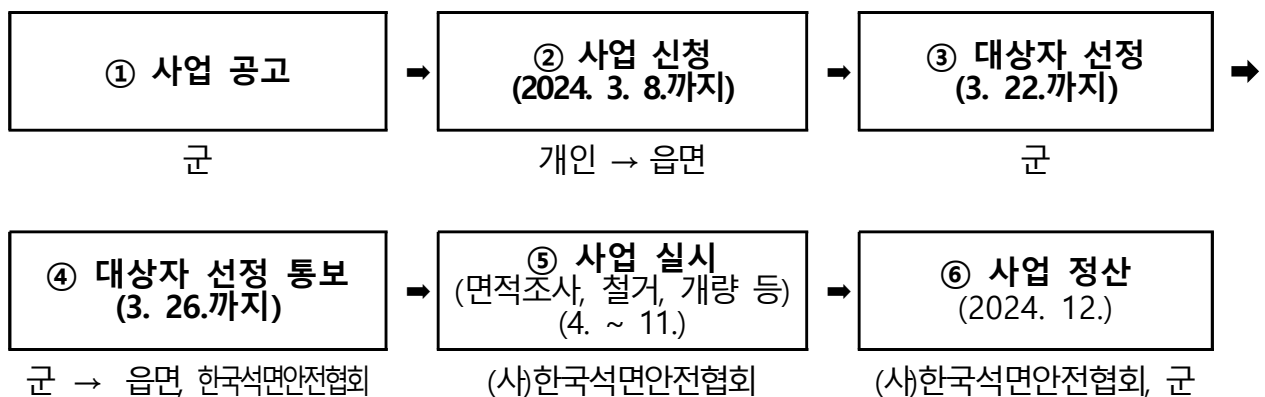
## 9. 신청서류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이행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실확인서(미등재(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1부.
- 사실확인서(건축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해당) 1부.
-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해당하며, 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등) 1부
- 우선지원가구 증빙 서류(우선지원가구인 경우 해당, 수급자 증명서 등)

## 10. 사업추진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공사업체에 지급
- 개인이 공사업체 선정 불가
- 슬레이트와 무관한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은 신청자 자부담 처리
- 신청자 본인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하였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 11.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있을 수 있음

## 12. 기타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가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시 초과분 자부담
-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신청 불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선정 배제
- 동일인이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다만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055-940-3493)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 붙임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이행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사실확인서(미등재(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1부.
5. 사실확인서(건축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1부.
6. 포기서 1부.
7. 참고자료(기준중위소득표) 1부. 끝.

[붙임1 서식]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 )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p>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p> <pre>                     graph LR                     A["지원신청서 제출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gt; B["지원대상 선정 지자체"]                     B --&gt; C["공사업자 선정 지자체"]                     C --&gt; D["면적조사를 포함하여 공사 등 수행 선정된 공사업자"]                     D --&gt; E["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지자체 → 공사업자"]                 </pre> </div>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p>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p> <p>※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p>					
<b>거창군수 귀하</b>					
첨부서류	<p>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p>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붙임1 서식의 첨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2 서식]

## 사업이행 동의서

사업명 : 2024년 거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사업명: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위 본인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됨에 동의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4 서식]

[미등재(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사 실 확 인 서

○ 건축물 주소 :

○ 실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소유권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기타( )

건축물 용도	소유자	면적(m <sup>2</sup> )	건축연도	비 고

※ 반드시 소유권 확인 서류 첨부

상기 건축물에 \_\_\_\_\_이(가) 실제 소유자 및 거주함을 확인하며, 만약 위 건축물이 타인의 건축물이거나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하에 해결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신청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공무원 직 :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5 서식]

[건축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 사 실 확 인 서

○ 건축물 주소 :

○ 실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소유권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기타( )

건축물 용도	소유자	면 적(m <sup>2</sup> )	건축연도	비 고

※ 반드시 소유권 확인 서류 첨부

○ 건축주와 신청자 관계 :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첨부

○ 건축주와 신청자 상이한 이유 :

건축주 사망□, 상속등기과정□, 기타□(사유기재: )

상기 본인은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취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부상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관련자(상속권자 등) : (인)

거창군수 귀하

※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모두의 철거 동의서 징구

[붙임6 서식]

## 포 기 서

신청내역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고자 본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포기사유 (해당란에 “V”표시)

처리 및 지붕개량 자부담금 , 사업시기,  
기타 (사유 : )

2024년 월 일

위 포기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7 - 기준중위소득표]

○ 기준순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인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8인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9인	10,309,000	377,299	351,294	397,093
10인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